

춘천지방법원 2017. 11. 21 선고 2017가단2055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7. 11. 14.

판결 선고 2017. 11. 2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C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46.61㎡ 중 10625분의 756 지분에 관하여 2015. 12. 19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조규설

별지